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생산적 금융 • 포용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보도	2019.1.3.(목) 조간	배포	2019.1.2.(수)	

책임자	금융혁신과장 송현도(02-2100-2530)	담당자	박정원 사무관 (02-2100-2531)
------------	-----------------------------	------------	------------------------

제 목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준비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 2019년이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혁신 금융서비스의 조기시행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

-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 정착을 위해 법 시행('19.4.1)이전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신청 및 예비심사 절차 진행('19.1월~)
- ② 비대면거래 활성화, 핀테크 투자 활성화 제약 요인 개선 등을 위해 기존 법령, 그림자 규제 혁신 방안 마련('19.2월)
- ③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P2P 산업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 조속 입법 노력('19년 1/4분기)
- ④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직접 지원(40억원) 등 '19년도 핀테크 예산(79억원)에 대한 세부집행계획 마련('19.1월)
- ⑤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혁신을 위해 “핀테크 금요미팅” 등 정례적·상시적 현장 소통 강화('18.12월~)
- ⑥ 핀테크 확산을 위한 핀테크 체험·투자·채용 글로벌 박람회 개최('19.5월) 및 Fintech 전용 홈페이지 개설 추진('19년 1/4분기)

◆ '19.4.1.일부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하위법규를 입법예고하였으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 예정('19년 1/4분기)

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 정착('19.1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하위규정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혁신 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유도

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고시 제정 등을 1/4분기 중 마무리

* 일정(잠정) : (18.12.31.~19.2.11) 하위법규 입법예고 → ('19.1월) 부처협의 → ('19.2월) 법제처 심사 → ('19.4.1) 법 시행

②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19.4.1) 이전인 '19.1월부터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 진행

* 일정(잠정) : 1월중 사전신청 → 금감원, 금융위 실무단 예비심사(2~3월) → 법 시행일(4.1일)에 신청공고 → 혁신금융심사위 심사(4월 1~2째주) → 혁신금융서비스 신속 지정(4월중, 금융위원회 개최)

-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미리 구성(3월말)하여 운영방향을 마련

나. 기존 법령, 그림자 규제 혁신 추진('19.2월)

□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 및 그림자 규제 등 낡은 규제 정비 개선방안 발표(2월)

* 금융위·원 국조실·기재부, 핀테크지원센터·산업협회, 금융협회, 민간전문가 등 참여

※ 핀테크 기업 등이 건의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신기술 활용 확대, 지급결제 분야 혁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 제약 해소 등에 대해 민관합동 T/F ('18.10월~)를 중심으로 쏠부처 소관 규제 개선 검토 중

다. 빅데이터, P2P 등 금융혁신 과제 입법 노력('19년 1/4분기)

- 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18.11.15일, 김병욱 의원)
- ② **P2P 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 적극 추진**

* 발의된 의원입법안(5건)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별 정부대안 마련

라. 핀테크 예산 집행 계획 마련 및 공고('19.1월)

- ①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될 예정인 40억원* 등 '19년도 핀테크 예산안 **세부 집행계획 및 예산지원 기준 발표** 예정(1월)

*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

세부사업	금액(억원)	주요항목
①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 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40억원
② 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19	·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6.5억원 · 맞춤형 교육 4.2억원 · 해외진출컨설팅 6.8억원
③ 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2	· 국제동향연구 0.9억원 · 해외 감독당국과 셔틀미팅 1억원
④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 핀테크 체험 박람회 8.2억원
합 계	79	

- ②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핀테크 예산 집행계획 및 사업 진행상황 지속 공개**(지속)

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강화('18.12월~)

-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상시 의사소통 추진**(상시)
 - 핀테크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례적·상시적으로 핀테크 기업 등을 방문**(“핀테크 금요미팅”)하여 건의사항 청취 등 실시 예정
 - ※ '18.12월 중 비대면 금융거래 규제 개선을 위해 키움증권(12.13일), 신기술·신사업 규제현황 의견수렴을 위해 신한핀테크랩(12.20일) 방문
 - 현장간담회 건의과제 등에 대한 **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 2019년 1-2월중 금융혁신 현장간담회("핀테크 금요일미팅") 일정(잠정) >

회차	일자	장소(잠정)	주제/참석자
1차	1.11(금)	KB카드 (종로)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핀테크 규제개혁 T/F 2분과 회의) T/F 2분과 민간위원, 은행연합회, 금투협, 여신협 등
2차	1.18(금)	핀테크지원센터 (공덕)	지정대리인 제도 관련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
3차	1.25(금)	디캠프 (선릉)	핀테크 예산·특별법 설명회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4차	1월중	미정	전자금융업 관련 주요 전자금융업자 등
5차	2월중	미정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6차	2월중	미정	핀테크 규제개혁 관련 T/F 민간위원,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 3월부터는 로보어드바이저, 인슈테크 등 업권별 핀테크 현장방문도 병행예정

바. 핀테크 확산을 위한 체험·투자·채용 글로벌 박람회 개최('19.5월) 등

① 핀테크 산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핀테크 기업의 홍보를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5월)

*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해외진출 지원 및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효과

< 핀테크 박람회 개요 (잠정) >

- (일시) '19.5.23(목)~5.25(토)
- (장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참석자) 금융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협회, 공공기관 등), 한국핀테크 산업협회, World Bank, 영국, 싱가포르, 동남아 등 해외 핀테크 유관기관 등
- (프로그램) 청소년 등 핀테크 서비스 체험, 창업·취업 상담, 해외진출 컨설팅, 성공사례 공유 세미나, 아이디어 공모전 등

② 핀테크 제도 소개, 테스트 베드 제도 관련 신청 등 **국내 핀테크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Fintech 전용 홈페이지 구축**('19년 1/4분기)

③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북 및 **홍보영상 배포** 등 실시('19년 1/4분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실시('18.12.31)

- ① (입법예고 실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18.12.31일 공포('19.4.1. 시행 예정)됨에 따라,
 - 하위법규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제정안을 1231일 입법예고함
 - * 금융위 홈페이지(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 참고
- ② (향후 계획)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시행일 '19.4.1.)을 위해 하위법규의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
 - * 일정(잠정) : (18.12.31.~19.2.11) 하위법규 입법예고 → ('19.1월) 부처협의 → ('19.2월) 규제위·법제처 심사 → ('19.4.1) 법 시행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운영 (§5, §6, §7, §8)
 - (위원구성) 심사위원회에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핀테크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5①,②)
 - ※ (법) 금융위원장(長),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 시행령 위임
 - (민간위원)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하되 **결격요건*** 규정(§6①,④)
 - *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해당 / 금융관계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면제된 날부터 5년 내 등
- ②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자격(§4)
 - ※ (법) "금융회사등"[금융회사(은행/보험/금투 등) + 전자금융업자 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가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가능
 - * 주금공, 신보, 농신보, 예보, 자산관리공사, 기보, 예탁원, 거래소

③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12)

- 금융혁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유·증빙자료·손해배상계획서 제출 의무
-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 의무

④ 혁신금융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처리(§13)

- 금융혁신사업자 분쟁처리책임자 지정 및 연락처 게시 의무
- 이용자로부터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자는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 알릴 의무

⑤ 혁신금융서비스 지원(출연금, 보조금) 관련

-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은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출연금·보조금 사용이 불가하며, 위반시 금융위는 자금회수 가능(§11②,③)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

◆ (기본방향) 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및 현재 운영중인 기존 테스트베드 관련 규정을 통합 규정

- ① 혁신법에 신설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세부사항 규정
 - + ② 법적 근거가 마련된 규제신속확인 제도 세부사항 규정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 운영규칙’을 참조하여 규정)
 - + ③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정대리인 제도 세부사항 규정
(현행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이관)
 - + ④ 위탁테스트 제도 운영 근거 마련 및 적용규정 명확화

1]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 안전 검토, 예산 집행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8)

2] 규제신속확인 제도 관련

※ 유사한 제도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근거규정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참고하여 규정

- 타 부처 소관사항의 경우, 금융위는 해당부처에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송부하고 회신기한을 적시하여 통보(§14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 운영규칙'의 조문 준용(§15)

* (준용조항) 공동신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반려, 회신내용 공개

3] 지정대리인 제도 관련 (금융회사 → 핀테크기업 위탁)

-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기간을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16①)
- 금융위 내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설치(§17)하고 심사위원회 지원을 위해 자문단 운영 근거 마련(§23)

* (구성)금융위 사무처장(長),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민간 위촉위원(4명 이내)

-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과 업무위탁 계약 체결 시 금감원 보고 의무(§26①)

4] 위탁테스트 관련 (핀테크기업 → 금융회사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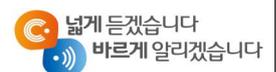
※ 현재 금융회사는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제도 운영 중

- 위탁테스트 수행에 대한 근거를 명확화(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 (§30)하고 관련 규정이 적용됨을 규정(§31)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시,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규제 등 규제에 대한 특례 부여
 - 금융위 산하에 혁신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정 여부를 심사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 >



- **(소비자보호·감독)** 시범영업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영업과정을 관리·감독
 - 사업자가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준수토록 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적합성 여부를 심사
 -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현황을 정기 보고토록 하고, 금융위에 서비스 중지명령 등 조치권한을 부여
 - 사업자의 배상여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테스트 후속조치)** 기간 종료 시 규제특례는 원칙 종료되나,
 - 시장 안착을 위해 정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에 입법조치 권고 가능
- **(기타 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이외의 제도들도 규정
 -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특정법령의 적용여부 등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

1 추진일정

□ '18.11.15일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 경주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또는 법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

2 추진과제별 상세일정

과 제			일 정
마이데이터, 비금융정보 전문CB, 개인사업자 CB 등 혁신적 신규 Players 출현 유도			■ '19년 중 「신정법」 개정
CB사에 빅데이터 관련 업무 허용			■ '19년 중 「신정법」 개정
신용정보산업 인프라 정비	금융권 정보공유 확대	공공정보 등 공유 확대	■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 ■ '19년 중 「신정법」 개정
		금융권 정보공유 사각지대 해소	■ 「신정법」 하위법령 개정 ■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신정원 기능 확충	데이터 전문기관 역할 수행	■ '19년 중 「신정법」 개정
		빅데이터 DB·분석시스템 구축	■ '19년 상반기 시행 예정
		채권자변동조회 시스템 확대 개편	■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 '19년 중 「신정법」 개정
	CB업 책임성·투명성 제고	지배구조·영업행위 규제 도입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설치		■ '19년 중 「신정법」 개정	

1. 법안 발의 내용 ※ 제정안 3개, 개정안 2개

- ① (제정안 : 민병두, 김수민, 이진복 의원) P2P업체를 별도 금융업으로 인정하여 금융위 등록 대상에 포섭하고, 차입자·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 거래구조(직접·간접), 투자·대출 한도, 자기자금 투자 허용 등 세부 규율에 차이
- ② (대부업법 개정안 : 박광온 의원) P2P업체를 대부중개업자 범주에 포함시켜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자와 동일하게 규율
- ③ (자본시장법 개정안 : 박선숙 의원) P2P업체를 금융투자업자로 포섭하고 이와 유사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에 준하여 규율

2. 기본 방향

(1) 법제화 입장 :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제화 필요**

- P2P대출 시장규모가 그동안 크게 성장('16년말 4천억 → '18.9월 4.3조)
- 최근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연계대부업자 178개사 대상), **P2P대출이** 그간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성장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사기·횡령 및 불건전 영업행위도 다수 발견 → 소비자 보호 시급

- (사기·횡령)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사용한 사기·횡령 사고 다수 발견
- (불건전 영업) 대주주 자기사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 대출 이용, 돌려막기형 고위험 상품, 고객정보 보호장치 허술 등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
- (투자 유인) P2P 업체가 연체 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여 연체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경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

(2) 입법형식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종전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 ⇨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

□ **P2P대출**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새로운 금융업이므로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

① 투자자-차입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P2P대출** 업무 방식의 특수성을 기존의 법 체계로 규율하는데 한계

-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 체계로 차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P2P대출의 원리금수취권은 전통적인 증권**의 개념과 상이

* 차입자에 대한 P2P업체의 설명의무, 차입자에 대한 P2P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등

** (증권)유통가능성을 전제로 한 시장위험 (원리금수취권) 차입자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

- 대부업법은 투자자 보호에 부족하며, P2P대출은 대부중개업*과 차이

* P2P업체는 투자자-차입자 모집뿐만 아니라, 원리금수취권 발행, 채권관리 등 수행

② 기존 법률과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법 적용 여부나, 적용 범위 등에 대해 단일화된 조율체계 필요

③ P2P대출이 발전한 영국도 **P2P대출**을 독자적인 금융업으로 규율

(3) 쟁점* 관련 : 의원별 법안,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P2P 산업 발전과 소비자보호 달성을 위한 종합적 대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

* P2P대출 거래 구조/진입 요건/P2P업체 자기자금 투자/중개수수료 수취/ 대출 및 투자한도 등

(4) 일정 : 정부 대안을 바탕으로 가급적 조기에('19.1분기) 법제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

< P2P대출 관련 의원발의 법안 비교 >

구분 (발의일)	민병두案 (‘17.7.20.)	김수민案 (‘18.2.23.)	이진복案 (‘18.4.13.)	박광온案 (‘18.2.6.)	박선숙案 (‘18.8.28.)
입법형태	별도 법안 제정			기존 법안 개정	기존 법안 개정
입법안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	온라인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진입규제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최저자본금	법인, 3억원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주식회사, 5억원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주식회사, 5억원 이상
영업 행위 규제	공통	차입자 및 투자자 보호 ① 과장광고규제, ② 공시규제, ③ 설명의무, ④ 신의성실의무 등		차입자 보호 중심 (이자율제한, 설명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중심 (공시규제 등)
	자기 자금 투자	제한 없이 가능	투자금 95% 이상 모집시 자기 자본 내에서 투자 가능	자기 자본 내에서 투자 가능	-
투자한도	시행령 위임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차입한도	개인 1억원, 소상공인 5억원, 법인 10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이용자 보호	① 투자예치금 별도보관 ② 손해배상책임	① 투자예치금 및 상환금 별도보관 ② 손해배상책임	① 투자예치금 및 상환금 별도보관 ② 손해배상책임	투자자 보호 규정 부재	① 투자예치금 별도보관 ② 손해배상책임

참고4

핀테크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운영계획

◆ 핀테크 고도화를 저해하는 소금융권·소부처 규제를 발굴하여 검토·개선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규제 개혁 T/F 운영

□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신기술 확산 등 핀테크 고도화 소과정에 걸친 걸림돌 규제 발굴·개선

- ①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1분과)
- ②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2분과)
- ③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3분과)
- ④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4분과)
- ⑤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사업 규제 개선(5분과)

□ '18.10월부터 약 3~4개월간 다양한 통로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실무검토 및 T/F 논의를 거친 후, '19년초 개선방안 발표

- ('18.10~11월) 업계·금융권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등 규제 발굴
- ('18.11~12월) 실무 검토 및 T/F 검토, 관계기관 협의
- ('19.2월) 개선방안 마련

※ 규제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종합 개선방안 발표 이전이라도 확정·시행
특히, 비조치의견서, 유권해석 등으로 개선 가능한 경우 신속하게 추진

< 참고 >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규제 발굴 및 검토 프로세스



- **(의의)** 19년도 핀테크 예산 본회의 통과로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한 틀 구축
 -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인적·물적 자원이 영세한 핀테크 업체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종합적·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
 - 핀테크 업체가 新금융서비스 실험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 기대

- **(예산내역)**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 19.1억원, 핀테크 박람회** 8.2억원 등으로 구성

*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의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데모데이, 청소년 등 핀테크 체험,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 등을 함께 실시

< '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

세부사업	금액(억원)	주요항목
①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 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40억원
② 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19	·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6.5억원 · 맞춤형 교육 4.2억원 · 해외진출컨설팅 6.8억원
③ 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2	· 국제동향연구 0.9억원 · 해외 감독당국과 셔틀미팅 1억원
④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 핀테크 체험 박람회 8.2억원
합 계	79	

- **(향후계획)** 핀테크 예산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핀테크 예산 집행계획을 발표 예정
 - 또한, 향후 핀테크 박람회 개최, 테스트베드 제도 운영 등 예산관련 사업 진행 상황을 보도자료 배포 등 지속 공개 예정